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거래처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연계가 필요한 민감정보 등을 명시하고,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연계가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과세정보 명시(안 제48조의2 신설)

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이용되는 거래처(납부자, 수령인 등)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에 명시되어야 연계가 가능한 외국인 및 사업자 정보를 명시함.

나. 연계기관 협의체 설치 및 연계기관 협의회 구성·운영 사항 규정(안 제48조의3 및 안 제48조의4 신설)

연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주요사항 심의·의결 등을 위한 연계기관 협의체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 위원자격 및 심의사항 등 재정정보 연계기관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~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)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)할 수 있다.

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정보
2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
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

제4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3(재정정보 연계기관 협의체의 설치 등)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연계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한 기관을 포함하는 재정정보 연계기관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4(재정정보 연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협의회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법 제97조의2제1항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2.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3. 한국재정정보원 원장

② 협의회의 의장은 제1항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.

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
2.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한 재정정보 등의 처리·활용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
3. 시스템 연계 및 연계된 시스템을 통한 재정정보 등의 처리·활용 등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협의회 회의는 의장, 제1항 각호에 따른 위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협의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,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

항을 처리하도록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
제48조의2를 제48조의5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“법 제97조의2제3항에”를 “법 제97조의2제4항에”로, 제48조의2제3항 중 “법 제97조의2제3항에”를 “법 제97조의2제4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8조의2(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)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)할 수 있다.</u> <u>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정보</u> <u>2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</u> <u>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</u>
<u><신 설></u>	<u>제48조의3(재정정보 연계기관 협의체의 설치 등)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연계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한</u>

<신 설>

기관을 포함하는 재정정보 연계
기관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
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
다.

제48조의4(재정정보 연계기관 협
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협의
회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
으로 구성한다.

1. 법 97조의2제1항의 정보통신
매체 및 프로그램의 운영·관리
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
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
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
람

2. 법 97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
적 시스템을 연계한 기관의 장
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
는 사람

3. 한국재정정보원 원장

② 협의회의 의장은 제1항제1호의
사람으로 한다.

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심의한다.

1.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른 시
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

2.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연

	<u>계된 시스템을 통한 재정정보 등의 처리·활용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</u> <u>3. 시스템 연계 및 연계된 시스템을 통한 재정정보 등의 처리·활용 등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④ 협의회 회의는 의장,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⑤ 협의회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<u>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,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</u> <u>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</u>
<u>제45조의2(재정정보의 국회제공)</u> ① <u>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</u>	<u>제45조의5(재정정보의 국회제공)</u> ① <u>법 제97조의2제4항에 -----</u>

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 1. ~ 3. (생략) ② (생략)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<u>법 제97조 의2제3항에</u> 따라 국회에 재정정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정보 제 공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법 제97조 의2제4항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재정시스템과	
연 락 처	(044) 330 - 1513